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9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이해식 · 이인영

이연희 · 강훈식 · 조승래

한준호 · 채현일 · 허 영

김용만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, 기금 적립규모가 국 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,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.

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·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0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위하여"를 "위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	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	②		
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			
하기 <u>위하여</u> 그 수익을 최대로	위하여 공공성을 유지하		
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	<u>면서</u>		
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			
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			
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· 운용하			
되, 가입자, 가입자였던 자 및			
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			
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			
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			
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 다			
만,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			
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			
입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